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용 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 용 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
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인 5년 이내로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